# 일반구매론 이용약정서

(판매기업용)

## 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귀중

[귀 행]과

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함) 사이에 체결된 일반구매론 계약에 기초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(이하

"물품 등"이라 함)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「**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**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 등이 적 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

### 제 1조(목적)

이 약정은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의 일반구매론 계약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수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 제 2조(용어의 정의)

-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"구매기업"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2. "판매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3. "벤더기업"이라 함은 판매기업(=1차 협력기업)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.
- 4. "지급슝인명세"(이하 "슝인명세"라 함)라 함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,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슝인이 필요합니다.
- 5. "지급승인금액"(이하 "승인금액"이라 함)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.
- 6. "판매기업입금일"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입금받는 일자를 말하여, 통상 구매기업의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로 지정합니다.
- 7. "구매기업결제일"(이하 "결제일"이라 함)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, 슛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.
- 8. "선입금"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, 제9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"선입금 등"이라 합니다.
- 9. "벤더입금"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10. "지급승인기간"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11. "선입금기간"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, 선입금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12. "거치기간"이라 함은 판매기업 입금일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경우, 판매기업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, 이자부담주체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13. "연장기간"이라 함은 슝인금액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기간을 말합니다.
- 14. "매매보호거래"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(인수) 절차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15. "기업인터넷뱅킹"이라 함은 기업뱅킹, CMS 등을 말합니다.
- 16. "전자적인 방식"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, 선입금 등 일반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.

## 제 3조(판매기업 이용약정)

판매기업 이용약정은 "만기입금방식(필요시 선입금 가능)"으로 가능하며,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입금방식	입금방식 설명			
만기입금 방식	슝인명세 상 판매기업입금일 전 영업일까지 분할하여 선입금 가능하거나,			
(필요시 선입금 가늉)	판매기업 입금일에 만기 수령하는 방식			

## 제 4조(입금계좌의 지정)

판매기업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.

(㈜하나은행에 개설된 판매기업 본인의 입금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

# 제 5조(지급승인)

-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승인명세에 대하여 판매기업을 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이 지급슝인을 하는 때에, 은행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이 계약에 따라 지급보중하며, 은행은 슝인명세의 내용대





- 로 판매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의 책임을 구매기업과 함께 부담합니다.
- ③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에 따라 지급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 은행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.
- ④ 은행은 지급승인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 6조(슝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)

- ①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, 지급승인 이후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, 전 산조작 오류,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, 은행에 지급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승인명세의 판매기업, 승인금액, 결제일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,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합니다.
  - 1. 변경 가능한 세금계산서 정보
    - 가. 세금계산서 종류
    - 나.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
    - 다. 공급받는자 상호명
    - 라. 공급자 상호명
    - 마. 품목명
    - 바. 세금계산서 귱급금액
    - 사. 세액
    - 아. 합계금액
  - 2.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이 가능한 경우
  - 가. 승인명세 등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 가능
  - 나. 당행의 승인명세 등과 연결이 되어있으나, 타행의 승인명세 등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정보변경 가능. 단, 금융 결제원에 집중된 세금계산서와의 정합성을 확인함
  - 다. 당행 및 타행의 승인명세 등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변경 불가
- ② 구매기업이 슝인명세를 취소하거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지급슝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은행은 지급보중 책임, 기타 슝인명세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  - 1. 판매기업이 슝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듕을 실행한 경우
  - 2. 판매기업 입금일이 도래한 경우
- ④ 매매보호거래시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권리이전(인수)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판매기업 입금일에 자동으로 승인명세 및 지급 승인이 취소됩니다.
- ⑤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 시,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7조(지급승인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.

- 1. 구매기업과 은행간 약정한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 제6조(감액, 정지)에 의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
- 2.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등,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
- 3. 슝인명세에 대하여 (가)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보류가 등록된 경우
- 4. 기타 구매기업과 은행간 체결한 약정 상 지급승인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
- 5.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## 제 8조(판매기업 채권의 소멸)

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(이하 통칭하여 "판매기업 채권"이라 합니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.

- 1.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받는 경우
  -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때에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금액 범위 내에서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합니다.
- 2. 판매기업이 만기 입금을 받는 경우
  -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된 때에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.

## 제 9조(판매대금의 입금)

- ① 은행은 다음과 같이 판매대금 입금업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.
- 1. 선입금신청시





- 가.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: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
- 나.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: 슝인명세 상 판매기업이 거치기간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선입금이자, 거치기간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 한 후, 판매기업 계 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 다만, 판매기업이 거치기간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후,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 로 합니다.
- 2. 벤더입금신청시
  - 가. 벤더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: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벤더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
  - 나. 판매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: 벤더입금 신청금액 전액을 벤더기업 계좌에 입금하고, 판매기업의 계좌에서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출금하기로 합니다.
  - 다. 슝인명세 상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벤더입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3. 만기입금시
  - 가.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: 판매기업 입금일에 수수료를 차감한 후.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
  - 나.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: 승인명세 상 판매기업이 거치기간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거치기간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후,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 다만, 판매기업이 거치기간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후,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
  - 다.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(인수)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.
- ② 선입금은 승인명세 건별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하여 선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③ 판매기업이 선입금 신청시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, 인터넷뱅킹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기로 하며, 이때 제출하는 "납품대금선입금신청서" 상의 인감이 본인의 입금계좌 인감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.
- ④ 판매기업의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.
- ⑤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, 세금계산서 발행일,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,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, 세금계산서 (승인)번호, 세금계산서공급가액, 세금계산서세액, 세금계산서합계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.

## 제 10조(대출이자 및 수수료의 운영기준)

대금입금시 발생하는 선입금이자, 거치기간이자, 각종 수수료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리 및 수수료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.

- 1. 대출이자는 대출이자 종류별로 이자부담 주체가 판매기업인 경우 대금입금시 차감하여 징구합니다.
  - 가. 선입금이자: 선입금일로부터 판매기업 입금일 전일까지 징구하는 이자로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.
  - 나. 거치기간이자 : 슝인명세 상 판매기업 입금일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경우, 판매기업 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 징 구하는 이자로서, 구매기업이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2. 일반구매론 이용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  - 가. 취급수수료 : 지급슝인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,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구매기업이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 - 나. 선입금미실행수수료 : 은행이 지급보중하는 지급승인 건별로 판매기업의 선입금미실행 잔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보중료 성격의 수수료로서,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.
  - 다. 벤더취급수수료: 판매기업이 신청하는 벤더입금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, 벤더입금 건별 일천원(₩1,000)을 부담키로 하며, 벤더입금 신청시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# 제 11조(선입금의 제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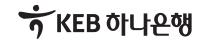
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입금을 제한합니다.

- 1. 승인명세에 대하여 (가)압류, 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12조에 따라 지급보류가 등록된 경우
- 2. 구매기업의 요청 또는 당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해 선입금 금지가 등록된 경우
- 3.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을 받는 등,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일반구매론 계약을 위반한 경우
- 4.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# 제 12조(지급보류 등록)

- 이 약정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(가)압류, 가처분, 체납처분 등(이하 "압류"라 합니다)이 송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.
- 1. 판매기업이 선입금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승인을 취소하고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.
- 3. 지급슝인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슝인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욘행욘 잔여금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을 하기로 합니다.
- 4. 지급보류 등록한 지급승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합니다.
  - 가. 결제일 도래시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.
  - 나.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.





#### 제 13조(이용시간)

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 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,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서비스 종류	평일	토요일/일요일/공휴일
조회	24시간	가능
판매기업 등록	08:00~22:00	불가
선입금 신청	08:00~19:00	불가
구매자료슝인/변경/취소 (당일전송 당일만기) (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)	08:00~22:00 08:00~15:00(EDI 14:00까[지]) 08:00~20:00(EDI 16:00까[지])	불가
벤더입금	08:00~19:00	불가

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. 단,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,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,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14조(정보제공의 동의)

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판매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선입금 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구매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## 제 15조(약정의 체결 및 변경)

- ① 일반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# 제 16조(면책)

-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아니하기로 합니다.
- ② 이 약정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「전자금용거래기본약관」 "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 "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#### 제 17조(효력)

- ① 이 약정서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의 순서로 합니다.
- ②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유합니다.

## 제 18조(관할법원의 합의)

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, 지역본부 또는 판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20	년	월	일		
		판마	H기업 :	 	(°C
		ᄌ	٨.		





③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

# 일반구매론 판매기업 거래신청서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1	줐심기	ĮĢĮ,	(구매기	lòi)	정비
	0 0 1	_	( - 411 /	/	$\alpha \mathbf{x}$

기업명		사업자등록번호	-		중심기업코드			
2. <b>판매기업 정보</b> (엽력기업코드 : )								
법인명				사업자등록번호				
(또는 상호명)				법인듕록번호				
대표이사 (또는 대표자명)				대표이사(대표자) 생년월일				
업 태				종 목				
주요취급품목								
사업장 주소	(우편번호:	)						
전화번호				팩스번호				
기업규모	□ 대기업	□ 중기업 [	□ 소기업	□ 공공 및 기타				
※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"□"에 "V" 표시 합니다.								
2. 담당자 정보								
담당부서				담당자명				

#### 3. 첨부서류

담당자전화번호

담당자팩스번호

- (1) 법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
- (2)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본인 자서시 생략가능), 대표자 실명확인증표
- (3)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
  - ① 법인사업자: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
  - ② 개인사업자: 위임장(개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),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

담당자휴대전화번호

담당자이메일

- (4) 공동대표인 경우
  - ① 법인사업자: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.
  - ②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합니다.
- (5) 위의 기본서류 외에 판매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이 약정과 관련하여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**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 등**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일반구매론 판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(판매 기업): (인)





5-06-0554(5-5) (2018.07 개정) 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8-약관-047 호